

문서번호	일자리경제과-14971
결재일자	2016.4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지역경제담당	일자리경제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
김진문	이재국	박태일	이용식	04/05 代손정수	
협 조					

2016.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추진계획

2016. 4.

기획경제국
일자리경제과

2016.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추진 계획

성북구 관내 청년 미취업자에게 현장근무 경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,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 및 청년층의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『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』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☞ 근거

-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(정부의 고용지원 등)
- 상공회의소법 제3조(사업) 16호
- 상공회의소법 제54조(보조금 : 예산의 범위안)

I 2015년 추진실적

- 사업(근무)기간 : 2015. 5. 1 ~ 10. 31(6개월간)
- 소요예산 : 110,000천원
- 지원실적

(단위:명)

지원 인원	성 별		지 역 별		학 력 별		정규직 전환
	남	여	관 내	타지역	고 졸	대 졸	
20	12	8	4	16	8	12	16명

※ 지원업체 현황 : 봉제업체 4개소, 도소매 4개소, 광고 2개소, 서비스 6개소, 기타 6개소 등 20개 업체

II 사업 개요

- 선발인원 : 18명
- 참여기업 : 성북구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'중소기업기본법'상 중소기업
- 운영방식 : 위탁운영(위·수탁자 역할분담)
 - 위탁자(성북구) :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수탁기관 지도·관리
 - 수탁자(성북구상공회) : 보조금관리, 참여기업·인턴희망자 모집·접수 및 참여기업 관리

- 구 지원기간 : 6개월
- 소요예산 : 110,000천원(전액구비)

III 세부 추진 계획

- 사업 기간 : 2016. 5. 1 ~ 10. 31
- 대 상
 - 인턴 : 성북구 관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
 - 참여기업
 - 성북구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1개 업체당 1인 채용
- 지원 조건
 - 임 금 : 1인 / 월 130만원 이상 (우리구 지원한도 : 월 100만원)
 - ⇒ 다만 종식비, 4대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은 채용업체에서 부담함.
 - 근무시간 : 인턴 약정이 정하는 규정 (당해 기업의 근로시간 기준)
 - ⇒ 연장근로, 휴게시간,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함.

IV 위탁사업 세부내역

- 운영체계
 - 수탁자(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)와 업무 협약 체결

-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
 - 모집인원 : 18명 (고졸 : 8명, 대졸 : 10명)
 - 모집(신청)자격

구 분	신 청 자 격
기 업	▶ 성북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 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☞ 「상시근로자」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
청년인턴	▶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중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자에 한함. ※ 단, 성북구 거주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선발 ※ 학력별 모집인원 미달시, 신청자가 많은 학력을 대체선발 ※ 대졸자의 경우, 성북구 관내 대학졸업자 우대 선발

○ 제외 대상

구분	제외대상
기업	①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 단위농협, 새마을금고 등) ②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③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 ④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.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, 인력수요 사업체 ⑦ 청년인턴제 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50%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(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가능) ⑧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
청년인턴	❶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. ❷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. ❸ 대학 재학생(통신, 사이버, 야간대학교 재학생은 예외) ❹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(기업) 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
참여기업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6. 4. 15. (금) ~ 4. 22. (금) [8일간]
- 제출서류
 - 1) 청년인턴 참여기업 신청서 1부.
 - 2) 청년인턴 운영 계획서 1부.
 - 3) 청년인턴 지원 협약서 1부.
- 접수처 : 일자리경제과,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

인턴 채용 공고 및 접수

- 공고(접수)기간 : 2016. 4. 15. (금) ~ 4. 29 (금) [15일간]
- 제출서류
 - 1) 청년인턴 신청서 1부.
 - 2) 주민등록등본 1통
 - 3) 청년인턴 약정서 1부.

- 접수 및 문의처 :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(☎(02)909-8195) 및 참여기업체

□ 참여(수요)기업 및 청년 인턴 선발 (채용)

- 참여기업 선정기준
 - ▶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, 기획 등 전문분야 업종 우선선정
 - ▶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2015년에 정규직 채용업체에 우선 채용
 - ⇒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중 근로자의 정리해고 또는 인위적 감원 금지

- ▶ 1 순위 : 신규 참여기업
- ▶ 2 순위 :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(서울시 인증업체)
- ▶ 3 순위 : 2회 이상 참여기업 (1, 2순위 대상기업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)

- 청년 인턴 선발 (채용)
 - ▶ 선발(채용)인원 : 18명 (1개 업체당 / 1명)
 - ⇒ 고졸 :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(예정자 포함)자 우대선발
대졸 : 관내 대학 졸업(예정)자 우선 선발
 - ▶ 선발(채용)방법
 - 1) 적정인력 대상자 요청 [참여(수요)기업 ⇒ 성북구상공회]
 - 2) 참여(수요)기업에서 면접(면담)을 통하여 적정 인력 선발
 - ⇒ 다만 적정 인력이 없을 경우 인력풀에서 대상자 선정(요청)

□ 청년 인턴 지원 및 관리

- 청년인턴 지원사업 추진 계획 통보 : 성북구청 ⇒ 성북구상공회
- 참여(수요)기업 및 청년인턴 선발(선정)이후 보조금 지원 : 성북구청 ⇒ 성북구상공회
- 청년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 통보 : 참여(수요)기업 ⇒ 성북구청, 성북구상공회
- ⇒ 특히 참여(수요)기업이 인턴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.

□ 사후 관리

- 성북구·성북구상공회와 합동으로 인턴제 적정 운영 여부 점검(서식12참조)

- 대 상 : 청년인턴제 참여기업
- 방 법 : 현장방문 점검 및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내역 등
- 내 용 : 청년인턴 약정서 및 협약서 서류점검
- 결과처리 : 위반사항 발생시 지원중단,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등

V 추진 일정

□ 세부 추진 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성북구상공회 업무협약체결	2016. 4. 5 ~ 2016. 4. 15	기간내
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	2016. 4. 15 ~	
참여기업 신청 접수	2016. 4. 15 ~ 2016. 4. 22	
기업별 채용공고 및 선발	2016. 4. 15 ~ 2016. 4. 29	
청년인턴 선발자 자격 적격여부 심의	2016. 4. 29 ~	
청년인턴 선발자 통보	2016. 4. 29 ~	
청년인턴 선발자 및 참여업체 확정	추후 결정	
근로계약 협약서 체결 등 근무개시	2016. 5. 1 예정	

VI 소요 예산

□ 소요 예산 : 110,000 천원

- 산출내역
 - ▶ 1,000,000원 × 18명 × 6개월 = 110,000 천원
- 예산과목 : 지역경제육성, 중소기업지원, 성북구상공회 운영지원, 민간이전, 민간위탁금 (청년인턴지원사업)

VII 행정 사항

- 청년인턴 지원사업 추진 계획 통보 - 성북구상공회, 동 주민센터
- 청년인턴 지원사업 협약체결 - 성북구청, 성북구상공회
-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추천 - 일자리경제과, 동 주민센터, 성북구상공회

- 청년인턴 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 운영 - 일자리경제과, 성북구상공회
- 구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에 「청년인턴 지원사업」 홍보 - 홍보담당관
- 각종 직능단체 및 통·반장회의시 홍보 - 동주민센터

붙임 : 1. 청년인턴사업 협약서 1부.
2. 관련 첨부서류 1부. 끝.